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정현백(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대표)

I. 분단현실과 여성의 역할

북한으로부터 들려오는 식량위기의 끔찍한 소식들은 다시 한번 '왜 여성에게 평화 통일이 절실한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흔히 여성은 천성적으로 평화를 더 사랑하고, 평화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라든가 혹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평화나 통일운동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존의 성역할을 더욱 고정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남녀사이의 거칠은 이분법적 적대관계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차라리 우리는 여성이 항상 전쟁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에서 우리의 논의를 출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일과 관련하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의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성들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정부를 향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기에, 여기에서 정부는 중요한 해결주체로 등장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먼저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행정책임자를 향해 특단의 조치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II. 김영삼정부의 평화·통일정책과 여성

김영삼정부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서로 뿌리나 이념이 다른 민

정, 민주, 공화의 3계파가 합당한만큼, 출발부터 개혁과 보수 사이의 혼돈 내지는 상호경쟁이 존재하였다. 이는 관료들의 행정처리에서도 여러가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인지 그 기본뿌리에 있어서는 보수주의를 깔고 있으면서, 종종 정치의 수면 위로 온건한 개혁정책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런 정권의 속성은 통일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김영삼정부의 초기 통일정책은 전향적이면서도 적극적이었다. 19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도 민족이 더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을 인도적 견지에서 조건없이 송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변질하였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태도는 강경, 보수로 선회하였다. 카터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의 합의 역시 급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죽음과 조문파동으로 다시 철회되고, 남북간의 불신과 감정적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 정부의 통일정책은 한편으로는 강경노선으로 치달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관성을 결여한 채 우왕좌왕하였다.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대북투자 기업인 내사, 경수로로 형 결정, 대북쌀지원, 인공기사건, 민간차원의 대북 쌀지원 불허, 성혜림사건, 4자회담과 쌀경협 연계, 잠수함 사건과 같은 일련의 대북관련 사안의 처리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3년간의 지루한 협상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배제되었고, 마지막에 경수로시설비 부담만을 떠안았을 뿐이다. 경제교류협력에서도 정부는 잠수함 침투사건을 기화로 북한에 상주하던 기술진조차 귀환시키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경제적 협력가능성도 동결되고 말았다. 이런 대북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대내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대북감정을 악화시킴으로써 보수적 정치세력의 안정화에 기여했을 뿐이다.

김영삼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자회담이 성사되는 7월께 정부의 대규모 북한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소식이 훌러 나오고 있다. 이를 빌미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민간차원의 북한돕기운동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의식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시가 급한 북한의 식량사정을 감안하자면, 정부가 내비치는 이런 대규모지원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버려서, 우리는 그사이 죽어갈 수많은 고귀한 생명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미 여연에서는 1995년 9월-10월 사이에 '북한수해 동포돕기 여성캠페인본부'

를 결성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 회』가 결성되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여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라는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717인의 여성들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식량은 필요량의 10%에도 못미치는 상황하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식량지원과 판문점을 통한 직접 수송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월23일 자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 적십자회담의 실패로 인해 이런 여성들의 요구는 현재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전체적인 통일논의나 통일정책이 이렇게 혼선을 거듭하면서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일을 둘러싼 국민적인 논의가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급박한 상황의 변화가 올 경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거기다가 전체 통일운동이나 정책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논의나 정책입안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대단히 약하다. 통일관련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93년이 10%, 94년이 10.9%에 불과하다. 9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NGO위원회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여성포럼에서 여성들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의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2,000년까지 30%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화 안보와 관련한 정보에 여성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현재까지 반향없는 메아리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통일정책이나 논의에서 특별히 여성의 대표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합이 여성에게 끼친 끔찍한 결과를 이미 접하였기 때문이다. 통일 후 5년사이에 옛 동독여성들의 취업율은 45%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1차적인 감원대상이 되었던 사실 이외에도 옛 동독의 탁아소경영이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화함으로써 탁아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자동적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직장퇴직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의 부족이 심해지면서 서독여성들의 실업율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결국 통일은 양쪽 여성 모두의 지위를 하락시켰다. 물론 이런 불행한 상황이 통일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혹은 보수 강경세력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통일과정에서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여성의 지위는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까닭에, 통일정책이나 논의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불가결하다.

마찬가지로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방비를 거론하지 않

을 수 없다. 지난 96년과 97년 예산을 보면 여전히 국방비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 1996년도 국방예산은 1995년의 11조 744억보다 12.5%나 증가한 12조4천6백 19억원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복지예산은 4.03%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교역 11위를 자랑하는 한국으로서는 어디에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수치이다. 97년에도 국방예산은 13조7,865억원이어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조3천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방비와 여성의 복지는 늘 역비례 관계를 지닌다. 국방비가 낮아질수록, 여성에게 돌아갈 복지의 혜택은 높아지는 까닭이다.

그외에도 여성계가 촉구하였던 군사문화나 그 피해를 막기위해 요구하였던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이나 외국군 주둔지역의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도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을 둘러싼 협상은 1995년 11월에 시작되어 1996년 9월7일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이기순씨가 미군에 의해 비참하게 목이 잘린 채 살해된지 3일째되는 날이다. 이 협상의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이 불행한 여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는 채, 협상은 끝나 버렸다. 김영삼정부의 등장 이후로도 1993년 서초동 김국혜씨 성폭행사건, 1994년 4월 윤현아씨 성폭행사건, 1995년 11월 천금숙씨 강간치상 사건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공무중에 저지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던가 혹은 '살인범이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할 수가 없다'는 한미행정협정의 불공평한 조항으로 인해, 미군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고, 이는 그들의 잔인한 범죄를 더욱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윤금이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캐네스 마이클도 사건 후 1년6개월이 지날 때까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다. 이를 통해 범죄미군들은 증거를 얼마든지 인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측에서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형기를 채우지 않고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 용산 미군기지 1호문 앞에서 정기적인 금요시위를 계속하여 왔고, 1996년 11월29일로 100회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정부는 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기 짹이 없다. 이는 바로 정부가 여성평화의 실현에 얼마나 불성실하고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NGO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하기 짹이 없다. 통일원에 의한 NGO지원은 4개 단체, 금액으로는 10억원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이미 설립 때부터 통일원과 관계가 있고, 통일원사업을 이양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로 이를 통해서도 정부의 여성역할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관변 위주의 통일운동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III. 바람직한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제언

1. 평화체제로의 과감한 전환

소련의 붕괴 이후 형성된 다극체제 하의 세계질서에서는 군사적 해제모니가 가진 절대적인 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제적 해제모니가 보다 중심적인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존 사회주의 지도국인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북한·쿠바·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들에게도 개혁·개방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동북아에서는 미,러,일,중의 4강협력체제가 정착하면서, 미국의 선도적 지도력은 유지되나 일방적인 이해관철은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타율적인 붕괴나 생존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분명한 입장천명과 중국의 급격한 경제력 성장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내부의 교란요인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분단고착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네 열강들에 의한 분단고착화정책을 현실로 받아 들이되,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민족적 단합과 제고된 민족역량에 의해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세를 감안하면서 여성계는 정부에게 발상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부는 과감하게 전쟁과 위협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평화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에 군축을 위한 접근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휴전선 양편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온갖 공격적 무기와 군사시설 및 주둔군을 감축 내지는 후퇴시키고, 남북의 군비를 합의과정을 통해 축소하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한미군도 감축해야 한다. 이것만이 남북한 모두에서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줄이고, 여성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

길이 될 것이다. 대의명분보다는 실익을 위하여, 위기에 몰려 때로는 더 예민하고 공격적이 되기 쉬운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정부는 참을성을 갖고 임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서독통일의 디딤돌이 된 것은 1970년대에 취해진 빌리 브란트의 획기적인 동방정책이었다. 실체로서의 동독국가의 승인, 상호불가침조약과 더불어 서독이 행한 경제지원은 통일을 위한 신뢰구축의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다. 1970년대의 냉전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난을 물리치고 강행된 브란트의 과감한 조치가 바로 이 시점 우리 정부나 정치지도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북한 역시도 국방비를 5% 절감한다면, 100만톤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여성·아동을 위한 의료지원

정부의 평화체제 모색과 함께 가장 시급히 필요한 조치는 식량지원이다. 남북한이 상호공존과 자주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더구나 굶주리는 같은 겨레에 대한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당국이 대국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면 양보를 하면서라도 대규모 식량지원을 감행한다면, 이는 남북간의 화해촉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의 양보가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결코 손해를 의미하지는 않음은 이미 서독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기형아를 낳는 산모들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의약품수송과 같은 대대적인 의료지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여성을 고려하는 통일정책의 수립

이미 앞에서 밝힌대로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여성계는 우선 전체 통일논의에 '여성적 시각'을 첨가한 통합적 조망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적 입장이 고려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시한다.

1) 정부는 98년부터라도 당장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돈을 여성을 위한 복지비로 전용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당장 중단된 한미행정협정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하고, 불공평한 법의 개정을 통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의 유린과 국가주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먼저 통일관련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이미 요구한 대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축협상에도 여성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4) 또한 통일논의에서 실종되어 버린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NGO단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이 보다 개선된 삶을 가능케 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의 상황과 앞으로의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지원되어야 한다.
- 분단의식을 극복하고 평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평화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그리고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5) 마지막으로 40여년간 분리되어 살아온 여성들, 그래서 서로 이질적인 가치관, 생활태도, 그리고 여성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조심스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여성 간의 대화나 만남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는 남한측 못지 않게 북한측의 의도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 간의 교류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옛 동독과 옛 서독페미니스트사이에 빛어지는 물이해와 불화는 전체 여성정책의 개선을 위한 추진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전철이 우리에게서도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제발표 8

정치 및 정책결정참여 / 국가기구등의 제도적 장치

정치 및 정책결정참여/ 국가기구등의 제도적 장치

김선옥 (이화여대 법대 교수)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행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활동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과연 그 정책이 의미있는 것인가에 관한 정책의 당위성, 정책의 집행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에 관한 정책의 영향과 효과, 정책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바를 달성하였는가에 관한 목표의 성취정도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었겠는가에 관한 정책대안 등을 기본 이슈로 한다. 즉 정책 평가를 통하여 미래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려는 회고적 작업이 된다.

그러나 오늘의 정책평가는 이러한 정책학적인 의미의 정책 평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기보다는 여성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정치적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 즉 정책으로 하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정말로 정책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실제로 정책으로 수립했는지, 집행했는지를 보는 수준이므로 정책의 효과성, 질을 따질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 이 평가를 하는 의미는 이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는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인 국민들을 만족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 정치시스템에서 그들의 지위를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할것이므로 여성 정책에 대한 여성유권자의 만족이 어느정도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회의 남녀평등실현의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성과 사회정의 실현의 주요한 지수 중의 하나이므로 오늘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정부의 개혁의 평

가의 본질적 내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다루어질 부분은 여성정책 중에서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부분과 국가기구 등의 제도적 장치 부분이다.

이는 정치의 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그리고 남녀평등사회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기구 등의 제도적 장치는 어떠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다.

II. 평가대상

현정부가 약속한 여성정책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1993-1997)과 15대 총선공약(1994-1998)을 중심으로 본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여성부문 (1992-1996)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으로(1993-1997) 수정하였는데, 여성관련사항은 제1절 성장잠재력의 강화에서 8. 노사관계의 안정중 8.1.6에서 남녀평등고용구현을 다루고, 제3절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에서 4. 사회복지증진중 4.5.1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4.8.1 여성고용의 증진, 4.8.2 여성근로자의 보호 등 부분적으로만 다루어 지고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 용	
	대통령공약사항중의 관련항목은 VIII.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중에서
1) 대통령공약사항	<p>NO.62 :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각종 법과 제도적 장애를 완전히 개선한다.</p> <p>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정부부처내 여성관련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관련정책이 강력히 추진될수 있도록 한다.</p> <p>NO.65 : 여성의 사회, 정치참여확대를 지원, 촉진한다.</p> <p>나. 고위정책결정직에 능력있는 여성을 과감히 기용하고, 각급의회의 여성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참여비율을 높인다.</p> <p>다.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당직에 여성참여를 대폭 늘린다.</p>
2) 15대 총선신한국당공약	<p>15대 총선시 신한국당 공약중 관련항목은 VII. 여성과 함께하는 선진된 남녀평등사회 중에서</p> <p>1. 여성의 공직참여 및 사회진출 기회를 계속 확대한다.</p> <p>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각급선거의 비례대표에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공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정치예비군 양성나. 여성의 공직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정부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 대폭 상향- 5급,7급 행정직 공개채용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다.특수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을 확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여학생에 개방- 경찰대학,세무대학,철도전문대학등 공무원양성 특수대학의 여학생 입학비율 대폭 확대 <p>2. 여성관련 행정기관을 강화하여 성차별적 관행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간다.</p> <p>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남녀평등기구 설치</p> <p>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p>

III. 정치 및 정책결정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약속에 대한 이행현황 및 평가

1. 고위정책결정직에 과감한 여성기용

(1) 이행현황

- 초기 각료임명: 여성장관 3명, 차관 1명
- 여성대사임명(핀란드), 여성시장임명, 여군 연대장 임명등

(2) 평가

고위정책결정직에 여성을 과감히 기용하겠다는 정책약속은 상징적인 일회성 시도들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도 않았고 정책적 목표도 분명하지않다.

따라서 정부출범시 고위정책결정직에 과감한 여성기용을 약속한 정부로서 24명의 장관중 3명(12.5%)을 여성으로 임명한 것은 그 정책의 실현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는 매년 줄어 95년 교육부장관이 경질된 이후 정부 제2장관만이 여성이다.

그 당시를 우리모두가 기억하겠지만 여성장관에 대한 언론과 관료사회의 편견은 여성장관들에게 남성장관들보다 훨씬 능력있고 훨씬 청렴할 것을 요구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올해초까지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개각 6회를 포함하여 28회의 개각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장관직을 거친사람이 78명이며 이들 장관의 평균재임기간은 11.1개월로 알려지고있다. 이중 여성은 보사,환경,교육,정무2,정무2등 5명(6.4%)이다.

이렇게 현정부의 각료임명은 인물선정 등에 있어 그 부적합함은 현정부인사의 큰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많은 남성장관들의 문책성 경질 후에도 남성장관은 계속 임명되어 왔지만 여성장관 한사람에 대한 평가는 모든 여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서 한 여성장관의 문책성 경질은 그 다음엔 여성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 버렸다.

2. 각급선거에서 비례대표중 여성일정비율이상 공천등 여성의회진출지원

(1) 이행현황

- 지방의회 광역 비례대표의 62%를 여성에게 할당하여 광역의원 339명중 여성 29명이 됨(8.6%). 비례대표가 없는 기초의원은 2,797명중 여성29명(1.1%)임.
- 국회:전국구 3명 여성에게 할당, 지역구 당선자 없음

(2) 평가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중 여성은 62% 공천했다. 다른 정당이 25-35%를 한 것에 비하면 이는 공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 선거에서도 보장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성실한 공약의 이행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다 많은 비율의 공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선거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후보공천시의 경우 몇 %를 또는 목표율을 언제까지 몇 %로 한다는 것을 당규 등에 규정함으로써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기구 설치

(1) 이행현황

- 미 이행

(2) 평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정치적 경력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특별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치훈련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이행이 없었다는 것은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의미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다는 것과 같다.

4. 주요당직 여성참여 대폭 증진

(1) 현황 (1997.5 현재<1992대비>)

- 당고문 11명중 여성 2명(18.1%)<9.1%>
- 당무위원 50명중 여성 3명(6%)<8.5%>
- 국책자문위원 500명중 여성12명(2.4%)<4.1%>
- 지구당위원장253명중 여성2명(0.8%)<0.8%>

(2) 평가

당고문의 경우 1명에서 2명이 됨으로써 100%정도의 대폭증진이 있었으나 다른 수준은 오히려 더 비율이 낮아졌다. 국책자문위원의 경우 266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성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늘므로써 비율은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지역구선거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지역구위원장은 여전히 2명 뿐이다.

정당내의 주요 당직의 여성의 참여증진은 각급 의회진출의 대전제이므로 정당의 당헌 내지 당규에 분명한 정책적 목표와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정책적 의미가 있다.

5. 공직참여비율의 지속적 증진

(1) 이행현황

- 세추위10대과제중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1996(10%)에서 2000년 20%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2005년까지 30% 목표율 설정

(2) 평가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과제로 채택되면서 관련공무원법령이 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6실적을 보면 외무고시 41명중 여성4명합격(추가합격자 1명포함), 행정고시 192명중 19명합격(추가합격자 2명포함),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285명중 25명합격(15명 추가합격)되어서 동조치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모두 18명이었다.

동조치는 앞으로 모든 채용시험에 확대하며 목표율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2000년까지 30%) 승진, 배치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한다. 또한 현행 군복무가산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은 7.2%(1995.9)로 1992년 5.5%에 비해 늘었으나 미진하다.

6. 특수교육기관의 여학생입학 확대

(1) 이행현황

- 공군사관학교 1997부터 10%
- 육군사관학교 1998부터 10%
- 세무대학 97년부터 2000년까지 20-50%
- 철도전문대학 96-1999까지 20-50%
- 1997부터 10%

(2) 평가

사관학교의 개방은 군간부조직에의 여성의 참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무대학 및 철도대학의 경우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양성교육기관으로써 현재의 일정비율은 오히려 여학생입학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고있다.

IV. 국가기구 등의 제도적 장치 관련 정책약속에 대한 이행현황

1. 대통령직속기구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설치

- 미 이행

2. 국무총리직속 남녀평등기구설치

- 미 이행

3. 정부부처내 여성관련행정조직의 기능강화

(1) 이행현황

- 40개 부처에 여성정책 협조부서 지정(국무총리지시)
- 노동부 근로여성국 확대개편 : 근로여성정책관을 국으로

(2) 평가

1994년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시행과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및 여성정책추진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40개 부처에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정책추진에 관한 업무지침이 국무총리지시(1994.7.제 1994-22호)로 시달된 바 있다. 이들 지정부서는 각 부처 여성관련법, 제도 및 여성정책관련사업, 대통령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중 여성정책관련사항,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당해부처내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그리고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조부서는 점차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많은 부처들을 중심으로 전담인력(여성정책담당관)의 배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 이행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의 개편

(2) 평가

종전의 지방의 가정복지국·과는 여성행정을 가족정책중심, 요보호여성 복지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전문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개편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여성정책담당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종전의 부녀복지담당부서의 명칭이 여성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조직보다 그 기능이나 인력이 강화되는 변화는 아니다. 이러한 개편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설 내지 개편되고 있는 여성정책전담부서가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전제되어야하고, 조직의 충분한 권한과 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하며, 특히 기관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5. 기타 관련조치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설치
- 성차별개선위원회 설치(여성발전기본법 근거)
- 한국여성개발원 확대 : 여성공동의장, 정보센터

V. 맷음말

1. 정치 및 정책결정참여/국가기구등의 제도적 장치의 여성정책적 의미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의 참여는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 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심사를 모든 정책에 고려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분야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또한 여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되어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평등한 참여없이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평등척도의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의 평등한 참여는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이 고려되게 함으로써 여성문제의 해결과 여성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문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주요 전제가 된다.

또한 여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여성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집행하는 담당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직이 국가행정조직에서 주변화되면 불명확한 임무와 적임직원, 재원, 권한의 부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성정책담당 행정부서의 조직상의 지위 및 업무가 부수적이어서는 안된다.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국가행정조직은 정부내의 중앙정책 조정단위로서 모든 정책분야에 성평등관점을 고려할수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국가행정조직은 가능한 정부 최고위 차원에 위치해야 하고, 비정부기구 및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를 목적으로 분권화된 기획, 이행과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제를 갖추어야하며, 충분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가져야하며, 정부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줄수있는 기회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앞으로의 과제

(1) 구조적 차별의 극복정책 : 잠정적 우대조치의 개발

국회의원 3%, 광역의회지방의회 4.6%로 표현되고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현황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여성의 교육수준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는 불균형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다.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한 장애는 사회구조적인 장애이므로 이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또한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이 제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여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실현하는 평등참여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이며, 사회 각 구성원의 집단들의 대표성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던 정치영역에서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의 선거구제도, 비례대표제, 정당제도, 정당공천제도 등을 포함한 선거관련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참여증진도 지금까지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영역에 여성의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의미 이외에 여성이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되어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많은 정책은 관료주의의 행정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 공무원이 각 분야에서 각 업무의 담당자로서 일하는 것은 여성의 특별한 경험과 관심과 이익을 정책입안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급직에의 여성참여 확대와 성별 직종분리현상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개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고위 공직에의 여성참여 확대, 공무원의 평등고용 실현을 위해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확대실시와 함께 다양한 적극적인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정치,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증진을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개발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여성의 경력발전지원정책

잠정적 우대조치 등의 제도적 보장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충분한 기회를 갖지못한 경력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특별히 마련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종류의 국가기구를 설치하는 성과를 가졌으나 이제는 이들 조직들이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이 행정조직의 주류에 위치하고 담당업무도 주류화함으로써 모든 국가정책에 여성의 관점이 통합되어 여성문제를 주류화하는 정책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중앙행정조직은 여성정책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관련 각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및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부처에는 관련업무를 여성정책적 시각에서 조정하고 협조할 수 있는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며, 지방행정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전담행정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는 남녀평등사회구현을 위한 법적 노력 의무를 확실히 갖게 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 등의 조직을 갖추는 것은 동법의 실현을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발표 9

여성과 미디어 정책 평가

여성과 미디어 정책 평가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I. 서 론

본고에서 필자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 중 여성과 미디어와 관련되는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중매체는 즉각적이며 광역적인 정보전달 능력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규범을 제시하며 사회의 의제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들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미 기존의 대중매체들이 우리의 생활공간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데 더해 날로 새롭고 다양한 매체들이 개발되고, 그 위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중매체 조직에 종사하는 인력의 성비는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여성종사자들은 부서배치 및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중매체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여성 참여도 지극히 낮다. 결국 대중매체와 관련되는 각종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지 못하고 매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행동규범이 성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되어야만 한다.

이에 필자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대통령공약사항, 15대 총선 공약 사항,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과 미디어관련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때 정책의 이행정도를 정책수립, 입법화, 프로그램화, 실행화의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정책의 내용을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과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정책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

II. 여성과 미디어관련 정책의 내용 및 평가

1. 나이로비 미래전략 및 북경회의 행동강령의 여성과 미디어 관 내용

나이로비 미래전략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
85. 대중매체 여성상 시정,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음란물 통제조치 마련	J-1. 미디어를 통한 표현과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권 증진 239. 정부의 역할 -미디어 교육, 훈련, 고용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권 증진 -여성과 미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 -관리직, 자문기구, 규제장치, 모니터 기구 등에 성평등한 임명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프로그램 증가
206. 대중매체 정책수립,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에 참여	240. 국가적, 국제적 미디어 기구의 역할 -균형적이며 다양한 여성상 제시 위한 규제장치 필요
207. 공영대중매체망에 여성참여, 전문직/책임직에 여성고용	241. 정부, 여성지위 향상 위한 국가기구의 역할 -여성의 작품제작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여성 미디어 전문가 인명록 개발 -균형적인 여성상 제시를 위한 지침, 자체 규제장치 개발에 여성참여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	
	242. 비정부 조직, 미디어 전문가 협회의 역할 -미디어 감시 그룹 형성 -정보기술 사용 위한 여성 훈련 -네트워크 형성 -미디어의 균형적이며 비공정관념적인 여성상 증진
	243. 정부, 국제조직의 역할 -균형적인 여성상 증진 위한 연구, 정보전략, 교육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제고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및 광고회사 독려 -미디어 종사자의 성민감성 훈련독려 -여성을 열등한 존재, 성적대상으로 제시하는 것 금지 -성고정관념적 미디어는 성차별이며, 여성의 지위를 낮추는 것이라는 인식 제고 -포르노그래피와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244. 미디어, 광고조직의 역할 -성고정관념, 폭력성, 포르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체 규제 기구나 행동지침 마련 -미디어 조직내 의사결정직의 여성 참여 증진
	245. 미디어 조직, 비정부조직, 사적 영역의 역할 -가족내 성평등에 관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가정내 책임의 분담 -여성지도자에 관한 작품제작과 자료확산 통해 역할모델 제시 -여성의 인권에 관한 인식제고 위한 캠페인, 정보 확산 -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지원

2. 우리나라 여성과 미디어 관련 정책의 내용

여성정책	정책	입법화	프로그램	실행화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부문)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심의기준 강화, 여성전문인 참여 -모니터 연합기구 설립 -모니터 제도 확대, 여성전문인 참여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모델 프로그램 개발	*	(*)	*	
* 대통령 공약사항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위한 위원회 설치 대중매체 등 성폭력 유발하는 사회환경 정화	*	*	(*)	*

여성정책	정책	입법화	프로그램	실행화
*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 개선 -대중매체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각종 언론, 방송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 -대중매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 -여성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 보급 확대	*			
* 여성발전 기본법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도록 한 다.			*	*
* 15대 총선의 공약 (신한국당)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대중매체 등의 성폭력 유발 사회환경 정화,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여건 적극 조성				

3. 우리나라 여성과 미디어 관련 정책의 평가

다른 많은 여성정책과 같이 여성과 미디어관련 정책 역시 여러 가지 정책계획 사이의 연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때 그때 발표되고는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앞에서 보듯이 미디어관련정책은 대통령 공약에서보다 7차 계획에서 더 포괄적이다. 특히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처음으로 여성개발부문을 독립된 장으로 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정책의 내용도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위한 심의기준 강화와 모니터활동의 효율

화를 위한 모니터연합기구 설립 등 좋은 세부과제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책 이행의 수준을 보면 실망적이다.

우선 심의기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보기로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총칙에서 공정성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제3조 2항), 인권의 존중(제12조), 성과 폭력의 표현과 관련한 규정이 있고, 1994년에 다양성 차원의 조항(제8조 2항)이 신설되었다. 제8조 2항(다양성 제고)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관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연령, 성별, 사회계층 등의 편향된 내용을 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인권의 존중)에서는 “방송은 인간의……존엄성을 존중하고……성별, 직업,…… 등 모든 면에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연중 이루어지는 방송심의 결과는 사회윤리와 도덕성 차원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그리고 지나치게 비속한 언어사용 등은 제재하는 반면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을 제대로 심의, 제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 유선방송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 요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관련 조항과 피해자의 신원공개금지 조항이 있는 정도이다. 즉 7차계획의 심의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볼때 ‘다양성 제고’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전문인의 참여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대중매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의사결정기구인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은 구색맞추기 식으로 임명되며 심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는 여성이 소수 참여하여 낮은 대표성을 보인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을 의결하였으나 방송, 언론관련 위원회의 여성전문인의 참여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외 7차계획 중 모니터제도의 확대는 방송, 언론사 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충실히 못하고 성평등적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모니터 연합기구의 설립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를 보면 우선 ‘대중매체 성차별개선 위원회 설치’는 정무장관(제2)실이 추진하여 1995년 5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편견개선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개선책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세미나(1995년 11월)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성차별개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소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사실상 소위원회는 없어졌다.

공약사항 중 ‘대중매체 등 성폭력 유발하는 사회환경 정화’는 이 공약 자체가 미디어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본유적인 목적을 가졌던 것이 아니며 내무부의 성범죄 단속과 불법 만화 및 비디오 단속이 있었을 뿐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에 포함된 정책을 보기로 하자. 10대 과제에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개선이 과제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를 비롯한 매스컴운동단체에서 대중매체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앞으로의 여성정책이 보다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접근을 채택할 것을 암시한다.

동 정책과제의 도입은 그동안 공식·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급속히 증대하였음에도 사회 전반에 전근대적이며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편재해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다. 즉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이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대중매체는 사회의 가치관 형성 및 의제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체 프로그램이 여성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고, 남성과 여성의 탈고정관념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묘사한다면 사회의 여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 과제 중 여성과 미디어관련 정책의 이행정도를 보면 공보처의 경우는 94년 다양성조항의 신설이외에는 여성과 관련한 정책변화가 없다. 그러나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최근 들어 여성과 대중매체의 문제를 여성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예로, 1995년에는 텔레비전의 성차별적 내용을 시범모니터하였으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안에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편견 개선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편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6년에는 대중매체의 여성차별지표를 개발하여 ‘대중매체의 성차별지표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포상하고, 성평등의식을 담은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도록 추진해왔다. 1997년에는 텔레비전의 여성차별지표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무장관(제2)실이 추진하여 199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05년까지 30%로 올리기로 의결하였는데, 대중매체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은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96년 7월에 발표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 요청)에서는 “정무장관(제2)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방송심의규정의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추진중이다. 동 법은 시행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이상에서 볼 때 여성과 미디어관련 정책은 그 내용이 점차 충실히 해져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과 북경회의 행동강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조직내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부재하고 의사결정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성차별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아직 심의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심의규정이 개정되어 실제 성차별적 내용이 심이—와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화와 실행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PC통신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I. 앞으로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공영대중매체망의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문제는 제작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점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1996년 현재 대중매체 조직에 근무하는 여성종사자는 전체의 15.4%인데, 신문사는 경우 16.5%, 방송사는 14.3%, 통신사는 11.6%

에 불과하다(한국언론연구원, 1996). 방송사 별로 보면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3사에 근무하는 여성은 10.7%에 불과한데, 이는 특수 방송사(19.7%)와 통신사의 경우(11.6%)보다 다소 낮은 비율이다. 이들 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무직 또는 비서직에 편중되어 있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한국여기자클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5년 2월 현재 66개의 언론사(일간지 52사, 방송국 3사, 통신사 1사 조사)의 여기자 수는 686명으로 이들 기관의 기자 전체의 8.6%에 불과하다. 여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부서는 문화나 생활부이며 경제부나 정치부의 참여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대중매체망의 여성인력이 최소한의 임계질량이라도 되어야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에 관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80년대부터 방송의 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채용할당제를 실시하였으며 방송사 면허 인허가시에 평등고용관행을 고려하고 있다.

2.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직에 여성참여 확대

각종 언론, 방송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신임위원 선정시,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합시 여성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방송형태의 출현, 다매체 다채널,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 시장의 개방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방송법의 개정을 놓고 집단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 모두가 대중매체와 관련한 정책이 전환점에 놓여있음을 반영한다. 방송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대중매체조직의 인허가문제는 물론, 프로그램 내용의 심의와 관련한 규정이 달리 변화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책적 논의의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여 남녀시청자들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배제되거나 과소대표된 위원회에서 내리는 정책적 결정이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방송위원회에 여성특별분과 설치

앞에서 보았듯이 1995년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안에 대중매체의 편견개선위한 소위원

회를 설치하였으나 1996년에 설치된 성차별개선위원회가 그 기능을 흡수하기로 하고 없어진 셈이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공보처 안에 특별분과로 두는 방안이다. 현재 방송위원회 안에 아동에 대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이 여성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성차별 문제를 전문적,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지역민방협의체에 여성관련기구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4. 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 개선위한 심의규정 마련

현행 심의기준들은 사회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차원에서 성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인권존중이나 남녀평등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앞으로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국경없는 전파의 흐름과 정보의 교류,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다국적 자본가의 영향력의 증대 등으로 프로그램의 상업성, 선정성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국가적, 더 나아가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심의규정에 성차별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실제 심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방의 경우 허가갱신에 성차별위반점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의 원칙) 제4항 “계층간, 지역간 갈등.....”에 “성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 그리고 제15조의 어린이 및 청소년 선도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성차별의식의 개선 또는 성평등의식의 고취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IBA(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영국의 15개 독립방송국의 인허가를 관장하는 기구)는 방송사들에게 방영권을 부여할 때나 허가를 갱신할 때 방송사의 성평등 정책을 보고토록 하여 허가기준자료로 삼고 있다.

5. 여성의 미디어활동 지원

여성의 모니터활동 등 시청자운동을 효율화, 전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제작, 보급을 확대하며,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의 대안적 미디어제작훈련 및 실제 작품제작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성의 미디어활동은 크게 방송모니터활동 등의 시청자운동과 대안적 미디어 제작활동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니터활동의 경우 여러 단체가 매체나 장르를 차별화하지 않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체별 또는 장르별로 단체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현재는 모니터 단체들이 주로 프로그램의 내용만 모니터하는데 앞으로는 방송사의 인력고용 등 방송전반의 문제를 여성적 관점에서 모니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의 시민·여성단체의 모니터활

동은 대부분 주부회원들의 자원봉사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보다 고도화 된, 본격적인 모니터활동을 위해서는 전문모니터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니터 결과가 작품제작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외국에서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여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제작활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물론 미디어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의 대부분은 기존의 시스템안에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주류 미디어의 여성소외가 너무 심각하여 여성의 관심사를 통합시키는 작업과정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한 여성들이 기존의 조직 외부에서 독립적이며 의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시도를 해왔다. 예를 들어 여성잡지사나 출판사의 설립, 여성독립영화 프로덕션이나 여성영화제작 협동조합의 설립, 지역라디오 방송국의 개설, 유선방송체널의 확보, 여성미디어 네트워크 결성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여성중심의 언론사인 여성신문사가 창립하였고 여성기록영화제작팀(보임) 등의 활동이 있다. 그러나 대안적 미디어제작 활동은 아직 미흡하며 자금동원에 어려움이 크다. 방송영상의 경우는 막대한 광고비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의 시청자를 요구하며, 방송조직자체가 상당히 관료적이고, 복잡한 기술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를 요구하는 기술의존적인 조직이므로 여성의 개입에 어려움이 크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안적 미디어 제작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제작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제작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 그리고 여성 등 사회의 소수집단에게 access 체널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어 대안적인 시도가 좌절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6. 미디어종사자에게 성인지교육 실시

현재 방송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규직원교육 및 계속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과 여성문제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관심은 높았던 반면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인식, 성공정성(gender equity)나 공익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여러 외국의 예를 보면 대중매체 조직의 종사자들이나 노동조합에서 매체 프로그램 내용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지침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토론회와 교육기회를 마련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알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작년에 모 신문사에서 여기자들이 회사측에 건의문을 보낸 일을 제외하면 그러한 조직적인 시도가 전무하였다.

7. 대중매체조직의 성차별개선위한 지침서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은 자체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기준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풍양속과 사회윤리 차원일 뿐 성간 공정성이나 평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SBS의 경우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기준 중 프로그램의 일반기준에 ①인격·명예·인권 존중, ②공익성과 공공성, ③정확성·객관성·공정성 ⑦공중도덕과 사회윤리, ⑧가정 윤리, ⑨어린이 청소년, ⑩방송언어, ⑪표현, ⑫성, ⑬폭력·범죄, ⑭술·흡연·마약·정윤리, ⑯여성과 환경정책 평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인격·명예·인권존중에서 제4항 “인종, 성별, 직업, 종교, 교육 또는 빈부의 격차를 내세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시키거나 찬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성이나 폭력성을 다루는 조항의 내용은 기본 취지가 사회윤리와 도덕성을 위한 것이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KBS의 방송강령은 제11항에서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보호와 관련된 내용 뒤에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SBS의 규정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관련 규정, 장애자관련 규정 등과 달리 인구의 반을 이루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내용을 가정생활 보호규정과 함께 다룸으로써 그 중요성을 회석시키고 있다.

MBC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기준에서 풍속, 사회생활 관련 조항, 가정·가족관련 조항, 어린이·청소년관련 조항, 성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나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풍속이나 사회생활 규정, 가족과 성관련 규정 모두가 미풍양속과 사회윤리 차원일 뿐 성간 공정성이나 평등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중매체 특히, 공중파를 이용하는 방송사들은 매체 프로그램의 여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지침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캠페인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종사자들의 제작관행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국내의 조직들도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회의 여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남녀관계를 구축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10

여성과 환경정책 평가

여성과 환경정책 평가

이상영(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I. 머리말

여기서는 김영삼정부의 환경정책 중 여성과 관련되는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운동진영에서 조차 여성, 환경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논의를 시작한 역사가 짧고, 더군다나 정부의 환경정책 중 여성과 관련한 정책은 평가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여성, 환경정책을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법률, 예산, 개발 현황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이를 여성, 환경, 개발의 관점에서 읽어내기 위해서 특별히 지속불가능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흡하거나마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향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성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으려 한다.

이에 21세기 환경비전 및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선언, 신경제 5개년 계획, 국토종합개발 계획 등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원칙 및 법률, 예산 등에 관해 평가하고, 여성, 환경과 관련한 정책은 북경세계여성회의 환경분과 행동강령의 정책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몸말

1. 현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와 함께 지구환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

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를 이대로 방치하고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는 아무 것도 이를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세기에 한 나라의 환경 보전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중심에 선 일류국가가 되려면 우선 환경모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안전하고 천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1996년 환경의 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선언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대통령’ 선언」의 머리말이다. 김대통령은 이 선언문에서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 되는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놓고 있다. 아울러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5대 원칙으로써 정부수범, 환경과 경제의 통합,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원칙에 따라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7가지로 발표하였는데,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자치체제의 확대, 환경교육 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및 효율화, 환경외교의 강화가 그것이다.

김대통령은 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기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공동체 건설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모범국가를 건설해 나갈 것을 선언문 마지막에서 당부하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해 리우 환경선언의 키워드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 대통령까지 환경문제를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국가 건설을 위한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환경비전 21’이라 하여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 21세기의 환경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비전에서 사전예방, 환경과 경제의 조화, 원인자 부담, 경제적 유인 제도 활용,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정책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2. 개발 현황 및 환경파괴 실태

이처럼 정부는 환경문제를 국가운영에 있어 우선 순위는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환경을 중요시한다면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각종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부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계 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토개발로 생물종은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최근에는 대형 위락시설이 소비지향적인 생활 방식과 연계되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 더욱 자연이 훼손되었다. 각종 공장시설, 골프장, 콘도, 아파트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 및 모성 파괴, 문화적 소외감을 조성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낳았다.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김영삼 정부 이전의 개발과 연결지어서 짚어 보고, 특별히 현 정부 들어서서 추진된 개발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우선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에 의한 파괴를 들어보면, 이미 1967년부터 1990년 까지 삼림 면적 15만 9천ha가 감소하여 연간 8천ha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삼림이 줄어드는 것은 농경지 개간이나 공장택지 조성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골프장, 콘도 등 대형 위락시설에 의한 삼림파괴 면적이 늘어가고 있다.

1995년 말 현재 총 130개(운영 88, 건설 42)의 골프장이 운영되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총 건설가능 골프장 면적은 약 70,000ha로 서울면적의 1.1배가 되는 면적이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서 콘도 건축 붐이 일어나 건설중인 것까지 합하여 추산한 훼손 토지면적은 약 161.62ha이나 업체들이 건설신청을 계속 하고 있어서 훼손 토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북쪽에 위치하는 약 250만평의 대평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곳에서 ‘91년 8월 세계 잼버리 야영 대회가 열려 60만 평을 성토, 도로포장하여 토양 미생물, 곤충 등을 모두 멸종시켜 우리나라 유일한 대평원을 생태계의 사막으로 탈바꿈시켰다.

특별히 현 정부가 추진한 무주리조트는 면적이 720ha나 되는 대형스키장으로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무주군 남대천 일대의 약 24ha 면적은 반

딧불과 그 먹이인 다슬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12km 떨어진 상류지역에 무주리조트가 건설되면서 반딧불과 다슬기가 거의 사라지고 물고기마저 상당수 없어졌다. 또한 흙탕물과 소석회때문에 무주읍 주민의 식수원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환경운동단체가 극렬히 반대했지만 96년에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유치는 91년 김대통령의 선거 공약 내용이었기에 93년에 자연보전지구를 자연환경지구로 용도변경을 하고, 녹지자연도가 8,9등급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95년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화되면서 녹지등급을 변경하여 승인받았다. 단지 10일간의 대회에 1조 669억이 지출되었는데 이중 8천억은 정부가 지원해 주었다.

근대화를 내세우며 '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성된 공업단지는 개발에 의한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들 공업단지는 영남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울산의 숲은 곰솔이 우점종인데, 이 수종은 계속적인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피해 면적이 확산되고 있다. 해마다 수목의 개체수가 감소되어 몇년 후에는 숲의 속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울산지역 삼림 토양은 중화학단지로 접근할수록 토양 산도와 유기물 함량이 낮아진다고 한다.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

현 정부는 공단의 오염이 이 정도로 심한데도 위천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폐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질오염에 관한 부산, 대구, 경상도 시민들의 걱정은 매우 심각하다. 위천공단 설립계획은 95년 위천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위천에 공단이 세워질 경우 낙동강의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대구지역 경제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경남과 부산시민들이 반대하자 정부는 공단지과 수질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한다. 91년 4대강 수질보전 종합대책발표시 2급수를 목표하였으나 현재 평균 3,4급수이며 갈수록 때는 이보다 더 떨어진다. 수질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계획으로 위천공단이 세워지면 부산, 경남 주민들의 식수는 현재보다 더욱 오염되어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해안 생태계의 파괴 또한 대규모 간척사업과 핵발전소 온배수, 산업폐수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서해안은 대중국교류라는 미명아래 집중적인 개발 대상이 되었다.

서산간척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되어 매립전 2백 80여종의 어류가 지금은 28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천수만은 철새도래지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 수질이 악화되었고, 아산농장의 농약살포와 해미공군비행장의 소음공해로 철새가 더 이상 날아오지 않는다.

전라북도 서해안쪽에 위치한 변산반도는 드물게 해안에 인접한 국립공원이다. 변산은 1962년에 시작한 계획도 간척사업으로 2천7백41ha의 땅이 모두 논이 되었다. 군산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크기의 1백40배가 넘는 면적의 땅이다. 이 공사는 2004년까지 진행되는데 벌써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간척사업이후 어종이 줄어들어 어민들은 생활수단을 잃어버렸다. 또한 부안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주변의 산과 천연림인 미선나무와 광꽝나무 군락들이 마구 베어졌고, 부안댐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핵발전소 온배수는 해안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1백만 kw급 발전소의 경우 매초당 60톤의 온배수가 바다로 쏟아져 나와 양식이 불가능하고, 고창의 경우는 개량조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현 정부는 영광, 월성핵발전소의 연이은 방사능 누출사고로 불안한 가운데 신형 발전설비로 캔두형증수로 설치와 석모도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에는 활성단층지역이라는 이유로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일관성없는 핵에너지 정책으로 해양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이 지경인데도 김대통령은 거제도에 해양관광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생가인 거제도 장목면에 국방부와 낙동강환경관리청, 수산청이 군사상문제와 연안오염을 우려하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청 내에 거제관광 개발계를 신설하여 총 1조 3천억 규모의 공사를 대우가 맡아 골프장과 카지노, 특급호텔, 요트장 등을 세우는 것으로 2006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해역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황포주민들은 단지 개발로 인한 해양오염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늪지대의 파괴 또한 심각하여 세계적인 희귀조가 서식하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경우 대규모 군인아파트 건립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주남저수지는 '87년 낙동강 하구둑 공사로 철새의 낙원이었던 을숙도(천연기념물 179호)가 그 빛을 잊

어가자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로 부각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 산하 칠성사업단에서 대규모 군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어 철새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94년 이미 1,000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며,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주남저수지는 썩어가는 연못으로 남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런데도 창원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이라는 국방부 차체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천 또한 심각하다. 부산 황령산이나 서울 아차산, 광주 무등산, 충북 속리산 등에 온천 건설이 선경, 한솔 등 대기업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속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주민들이 6년이나 반대해 왔으나 강행하고 있다. 온천건설시기본이 되는 온천수의 성분이나 온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추진되고 있다.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사례

환경오염관련 건강피해의 경우 문제제기와 피해정도 및 구제정도 등에 대해 공식집계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80년부터 91년까지 총 93건이며 오염원별로는 공장과 공단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유해요인별로는 가스와 소음, 분진, 악취 및 폐수 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피해 유형은 신경계, 호흡기, 소화기 순으로 높으며 주민들은 피해에 대해 진정, 대책요구, 항의, 오염원이전요구, 공해방지설비요구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요구수용불가표명, 피해부인, 주민이주계획추진, 공해방지시설검토, 단속강화, 보상금지원, 건강진단 실시 등으로 대처하였다. (환경오염 관련 질병양상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의학협회, 1992)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진정건수는 매년 약 1,000건을 상회하는 빈도를 보이고, 이중 피해보상이 제기된 건수는 매년 20-30여 건에 이르나 건강피해에 대한 것은 극히 드물다.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이 야기한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생물학적인 악자인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피해이며 특히 모성파괴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간 피해사례를 들어 보자.

가장 충격적인 피해사례는 바로 핵발전소로 인한 기형아 출산문제였다. 당시 영광 핵발전소에 근무하던 한 노동자의 부인이 두차례나 뇌없는 아이를 사산하

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인근지역 고리 핵발전소에 근무하던 한 노동자의 부인도 아들과 딸 모두 뇌없는 아이를 출산하여 한 살도 못채우고 죽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세번째 기형아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89년이었는데 역시 핵발전소에 근무하던 한 노동자의 부인이 머리가 고무풍선처럼 조금만 눌러도 쑥쑥 들어가고, 한 살이 되기 전에 이미 머리둘레가 어른의 머리둘레보다 10센티가 더 크며 몸무게도 그 또래 아이보다 2배나 되는 기형아를 낳았다.

이 모두는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것이었으나 마치 기형아 출산이 여성의 잘못인 양 비추어지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거나 남편이 가출하여 생계를 책임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한편 1989년 주택가에 사는 주부가 세계 최초로 공해병인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 상봉동에 거주하던 박씨는 연탄공장에서 날라오는 탄가루가 폐에 쌓여 폐가 썩어들어가는 병에 걸렸으나 공해병임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 비협조적인 정부로 인해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보상비라고 겨우 돈 천만원만 받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갈갈이 찢긴 몸과 마음뿐, 현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탄광 광부뿐만 아니라 더러운 공기 속에서 살면 누구나 진폐증에 걸릴 수 있음을 입증하여 우리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밖에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골프장 잔디에 뿌리는 농약에 중독되어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계속 유산을 하는 사건, 낙동강 폐놀 유출사고시 임산부들의 사산 및 유산 사건, 작업장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불임 및 생리증단 사건 등이 있다.

대기오염에 의한 일반인의 피해도 날로 늘어가는데 전국 3,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적 의료비용이 1,477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임종수 박사)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주부들의 건강 또한 심각하다. 서울 목동과 상계동, 분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해 3명중 1명꼴로 호흡기 곤란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양대 예방의학센타 김윤신 교수)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건강도 위험한 수준이다. 서울, 속초,

충남 서천 초등학교 어린이 240명의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 어린이들의 폐활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오염지역의 어린이들이 만성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양대 김윤신 교수)

환경성질환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광역적이며 간접적이어서 원인파악이 어렵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지만 매년 암사망 환자중 20%가 환경성 암이라고 한다. (고대환경의학연구소)

4. 정책, 법률 및 예산 현황

먼저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우선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연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었다.

둘째, 환경용량의 지역별, 계절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국토를 개발한 결과 특정지역의 환경이 악화되었다.

셋째,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및 환경오염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했으나 환경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법률 및 예산은 어느 정도 환경보전 의지를 담은 것인지 파악해보자.

정부는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에서 감량우선의 정책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발생지 처리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 감량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수료 제도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종량제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21세기 환경비전에는 소각의 비율을 94년 2%에서 2005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소각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적정처리시설 분석에 따른 폐기물시설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시설 건설의 경우에만 예산지원을 하는 등 감량우선의 정책은 말뿐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사전에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냥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았지만 해가 갈수록 당초 예상한 것만큼 재활용품수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산업기반시설의 미비로 재활용품이 상품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발생원별, 성상별 쓰레기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폐기물정책을 세워야 한다.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이산화질소에 의한 연간피해액이 1천 8백원에 이른다. 오존오염도는 90년에서 95년 사이 2배로 높아졌다. 이에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93년 이후 대기기준 오존농도를 91개소에서 시간당 기준치를 8백 49회나 초과하여 사전예방차원에서 오존경보제가 재검토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중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즉 시설설치시 신고만으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절차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 사업체의 자가측정 의무제를 권장제로 완화, 환경관리인 고용기준을 한 기사가 여러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의 정책은 실종되고 사후규제차원의 정책방향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천공단지역의 경우 94년 한국화인케미컬의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피해 통계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단대기피해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92년 이미 주민이주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KIST에서 93년부터 공해조사를 하여 96년에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7월까지 발표를 미루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울산온산공단의 경우도 SO₂에 대한 총량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를 보고나서 다른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하여 오염이 급속하게 전전되는 것에 비해 대기오염정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시화공단이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공단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임의변경하여 이익을 올린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대기오염도가 주변도시에 비해 납이 31배나 높은데도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수질오염은 날로 심해져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먹는 물은 커녕 공장시설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통합된 물관리를 위해 국가관리의 원칙과 적정사용 및 비용부담, 유형별 관리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4대강 상수원보전 특별대책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배출시설 허가제를 폐지하여 규제완화한 결과 수질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팔당자연보전권역 완화법 또한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단속대상은 연면적 400m² (약 120평)이상의 유홍업소가 대부분으로 북한강변의 위락시설이 6년 동안 3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광역 상수원보호지역수질개선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상하류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수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폐수의 관리가 철저하게 가능한 지역은 환경관리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개발욕구를 수용하려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수질오염방지가 가능하고 외지인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현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완,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오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시 임시방편적임을 알 수 있다. LG그룹에 의해 씨프린스호, 사파이어호, 경해호 기름유출 사고가 연달아 3번이나 발생하여 어폐류와 해조류의 어획량이 40-70%감소했으나 LG는 어민신고액의 22%만 보상하려 했고, 가해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오염의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하고,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95년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로 넘겨버려 유명무실화시켰고, 영향평가 지역규모 설정,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불충분하여 개발업체와 지자체가 산림생태계의 녹지등급을 변경하여 각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한 예로 서울시 능골산의 경우 8등급 수림이 존재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사업지역 규모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기타 9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농림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주요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러브호텔, 식당, 아파트 등으로 96년의 경우 총 63,325건(2,341만평)이 전용되었으며, 96년에는 보전녹지지역을 관광사업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합법화하였다.

92년 건설부령이 완화되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과 공단내의 숲 형질변경이 가능해지고, 95년 산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림벌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96년 그린벨트법 또한 완화되어 생태계보전 원칙 역시 말뿐이며, 한국도로공사가 90년 이후 고속도로공사시 그린벨트를 60% 훼손했음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환경파괴에 국가기관이 앞장서 정부수범의 원칙 또한 선언차원에 머무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관련 예산 현황을 보자.

우리나라 환경부문 예산 (단위:억원)

GNP 대비	연도	환경부문 합계 /정부예산대비(%)	환경부 / 정부예산대비(%)
0.24	1992	5,819 (1.33)	1,396 (0.32)
0.26	1993	6,919 (1.35)	1,887 (0.37)
0.37	1994	11,232 (1.74)	4,716 (0.73)
0.51	1995	17,394 (2.33)	6,729 (0.90)

또한 96년은 정부 총예산 중 환경부 예산의 비율이 1.22%, 97년은 1.51%에 지나지 않아 최근 2년동안 환경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절대액이 작아 환경보전을 위해서 아직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규모도 그렇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주요 예산을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시설투자나 사후대응 부문에 지출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사전예방차원의 환경정책이 추진되려면 환경관련 과학기술이나 오염 추이, 환경영향 등 연구나 조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극히 부족하다. 95년의 경우 정부총예산중 환경분야의 R&D 비율이 0.072%에 불과하여 90년 주요 OECD 국가의 R&D 평균비율 2.29%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5. 향후 정책 과제

(1) 환경정책 과제

첫째,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분산되어 있는 환경업무를 통합, 일원화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분야의 규제완화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라

는 명분의 규제완화 방안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을 고수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환경정책과 계획의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고, 보다 상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이 각종 공해물질 배출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실시하여 가능한 오염원을 최소한 줄이는 동시에 환경오염원에 따라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알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오염원을 지적해 낼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오염관련 건강피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괄된 처리 창구가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강피해를 가능한 정확히 구명하는 방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지자체가 실시된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환경조례를 제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간 환경분쟁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시민환경운동에 대한 협조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환경관련 국제 협약에 적극 가입하고, 공해산업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2) 북경행동강령 및 여성환경정책 과제

누구나 환경오염에 의해 피해를 받지만 특별히 여성과 환경을 강조해서 논의하는 깊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들이 생물학적 약자로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제 4차 세계여성대회의 환경분과 행동강령의 기본관점은 다음과 같다. 즉 환경파괴를 지속불가능한 개발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위기의 주요 요인을 선진 산업국의 소비와 생산양식으로 보고 있다. 환경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여성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인식을 높여

야 하며, 여성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략목표는 첫째, 모든 차원의 환경정책 결정에 여성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과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남녀 평등적 관점을 견지할 것, 마지막으로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 등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목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 환경관련한 정책이 전무하여 별도의 평가를 하기보다는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첫째, 환경정책 수립과 계획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조직에 여성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는 커녕 각당 여성국이나 국회 여성특위에서조차 환경부문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환경파괴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경유해물질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환경파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는 지역공동체의 관리를 위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더불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센타와 조사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녹색생산과 소비를 위해 모니터나 홍보 등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자, 의사, 민간단체 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한의학협회에 환경분과가 생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여의사회 등에서도 불임이나 유산 및 질병의 환경성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서는 여성과 환경관련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여성들이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사업 등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III. 뜻말

환경파괴는 양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지속불가능한 개발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21세기에 건강하게 살아 남으려면 더이상 환경이 파괴되서는 안되며, 그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여성들이다.

여성들이 환경보전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여성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서가 아니다. 이제까지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공동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계층간, 지역간 연대를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성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단체나 여성단체의 환경소모임 등에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고 아울러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녹색소비문화를 정착시키자.

총 평

총괄 평가와 정책대안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I. 정부 여성정책의 문제점

정부의 여성정책의 내용과 이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여 국제적 문제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에 있어서 여성정책은 국제적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형식적 제도적 외양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힘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를 지닌다. 여연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북경행동강령 12개분야에 근거해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정책내용조차 제출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 10가지 분야로 줄여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1990년대 세계적으로 합의된 여성정책의 방향은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특정영역에서 따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모든 분야의 국가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증진과 모든 정책결정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UN을 중심으로 한 환경, 인권, 인구, 주택 등을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여성관련 주요쟁점이 항상 함께 논의되었으며 이 회의들의 결과를 수렴하여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 강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1985년 1월 국내 조약으로 공표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의 행동계획과 관련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며 1987년과 1992년에 제6차,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에서 여성개

발부문계획이 포함됨으로써 국가발전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이 함께 논의되게 된 수준이다. 그러나 계획의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들이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점검 이행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6년 7월부터 발효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는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당시 여연은 실효성 문제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시행령에서도 보완되지 않아 기본법이 목표로 하는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집행할 총괄부서인 정무장관(제2실)의 권한과 책임,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96년도 여성관련 예산을 보면 정무장관(제2실) 80억, 복지부 부녀복지예산 110억, 노동부 부녀예산 40억을 합하면 대략 230억원이다. 이를 96년 일반회계세출예산인 57조9천6백2십억에 대비해 보면 0.04%에 불과하다. 여성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정부의 여성정책 실행의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 주류화라는 세계가 합의한 경향과 역행하여 한국에서의 여성정책은 주변화·왜소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무장관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성운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자리매김되고 이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또한 여성정책의 실천을 위한 각 관계 부처간의 협의 조정과 성평등 관점의 관철 등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인간개발지수가 22위인데 반해 한국 여성의 남녀평등지수는 31위, 여성권한제도(여성의원비율, 여성행정관리직, 여성전문관리직, 여성소득구성비)는 78위,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세계 139위이다.

두 번째 문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여성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1세기를 여성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21세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 가족, 성,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 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노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직업의 종류, 필요한 기술수준, 고용의 형태 등이 예측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 내용 그리고 가족형태의 변화, 성문화의 변화가 동시에 예측되고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적 관점의 연구도 전무 할 뿐더러 개별분야에 대한 통계나 기초자료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때로는 여성운동의 힘에 밀려 때로는 선거 전략으로 때로는 국제적 의무 때문에 개별분야에서의 정책대안을 제시했을 뿐 정부 자체가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의식적으로 정책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 때도 마찬 가지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정해진 여성정책 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수평적으로는 관계부처 간에도 여성정책의 내용과 그 의미와 중요성이 공유되지 않는다. 예컨대 여성발전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여성정책부문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은 관계부처간 협의·조정·협력이 불가능한 상황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예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과 방안이 총리실, 외무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 다른 방안이 정무장관(제2실)에 의해 통합되어 조정되지 않는다. 이 와중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여성운동의 6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의도대로 풀려가고 있다.

수직적으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정도는 더 심하다. 행정조직상 한 단계씩 내려갈수록 원래의 정책내용과 의미는 회석되고 관료적 편의주의만이 남게 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성정책에 대한 교육의 부족과 여성정책이 압안되는 과정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앞서 김선욱 교수가 지적한 바대로 각 부처에, 그리고 각 지자체에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별 변화가 없는 문제를 들 수 있다.

II. 김영삼 정부 여성관련 정책 공약과 그 실행 수준

위와같이 여성정책 방향자체가 지닌 한계와 함께 김영삼 정부가 약속한 바 있는 공약대비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앞서 분석한 분야별 평가를 종합하여 공약대비 평가와 평점을 하면 다음과 같이 D 등급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정책입안의 측면보다는 정책에 근거해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하고 실행화했는지를 A, B, C, D, F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부족, 매우 부족)의 등급으로 평가했다.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평가

여성정책	평가 (실행화 정도)	비고
1. 대통령 치숙기구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현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청부부처 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관련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D	노동부근로여성국->근로여성정책관 정무장관(제2)실 기능 부분적 강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보완 강화하고 가족법을 개정한다.	D	남녀고용평등법 중 모집·채용차별금지조항 삽입, 남녀근로자 육아휴직사용조항 삽입
3. 시간제,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F	상속세에서 공제액이 상향조정, 상해보험시 여성근로연한 55세에서 60세로 확대
4. 주부의 가사노동기치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공적기준으로 반영한다.	D	
5. 여학생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미리사회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C	여자공고 8개 설립, 여자대학에 직업교육 확대
6. 3군사관학교 등 군사전문인력양성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해 여성전문기를 양성한다.	C	공군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10%(97년), 육군사관학교 10%(98년 예정)
7. 시,군,구 단위의 여성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D	40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안내 창구 개설되었으나 홍보 미흡으로 활용도가 낮음.
8.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 장려책을 도입한다.	C	5,7급 공무원채용시 복표설정 우선채용
9. 체용에서 승진,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전반에 걸쳐 모든 차별 관행이 제거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D	30대 체별회사 모집, 채용차별광고 시장 지시
10. 주부, 근로여성과 농어촌여성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여성사회교육을 한다.	D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증설했으나 프로그램 미흡

A = 아주 잘함 B = 잘함 C = 잘함 D = 보통 F = 매우 부족

11. 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해 학보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F	시교육비 증가
12. 농어촌 여성의 과중한 가사노동경감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중등학교 급식 을 전면 실시한다.	C	초등학교 전면실시, 중학교 일부 실시
13. 저소득모자가정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영세민 차내대상 화자금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D	인문고등학교 자녀 지원 없음
14. 노인여성의 사회참여를 축진하고 노인보건시설을 정비하며 제가의료서비스를 보급한다.	D	제가서비스 보급, 노인전문보건의료시설 2개소 개원 및 8개소 신축 중
15.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촉진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F	
16. 청업주부들의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고 시간제 취업, 재기근무, 단역적 근무 등 다양화된 근로형태를 개발 정착시킨다.	F	정책 입안에 문제가 있음.
17. 고위정책 결정에 능력있는 여성을 포함해 기용시키고 각급 의회의 여성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참여 비율을 높인다.	C	93년에 여성장관 3명 임용됐다가 현재 1명으로 축소, 15대 총선시 전국구 신한국당 18명중 3명 할애(18%), 2기 지방자치광역의회 비례대표중 62% 여성에 제칠애
18. 둑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당직에 여성참여를 대폭 늘린다.	F	신한국당 지구당 위원장 2명(0.8%), 당무위원 3명
19. 교과과정의 성차별적 내용을 삭제하고 청소년기부터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토록 기용시킨다.	D	성차별적인 내용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남녀평등 의식을 위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은 부족.
20. 교사에 의한 남녀평등의식을 강화하고 국공립 연수기관에 평등의식프로그램 실시를 의무화한다.	C	교원연수시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연수과정 편성 운영

A = 아주 잘함 B = 잘함 C = 보통 D = 부족 F = 매우 부족

21. 평동권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 등 성인 대상 평등의식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한다.	F	
22. 대중매체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인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D	대중매체 성차별적 편견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했다가 96년 성차별개선위원회 설치로 소위원회 해소
23. 현재 6,200개소의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4,000개소로 증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한다.	C	96년 3월 10,125개, 97년 13,678개 목표
24. 정부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교원 탁아소를 설치한다.	C	정부2청사에 탁아소 설치, 교원탁아소는 137개 설치 운영
25. 보육시설 운영비를 중액지원하여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D	
26.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체의 기부금을 순미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	C	
27.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B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시설, 일시보호시설 6개소 설치 운영
28.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운영한다.	C	
29. 대중매체 등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여 여성과 자녀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F	
30. 미래 사회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회교육을 강화한다.	F	
31. 기족상담 등 서비스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한다.	D	
32. 세대간 대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F	

A = 아주 잘함 B = 잘함 C = 보통 D = 부족 F = 매우 부족

III. 2002년까지 실행되어야 할 여성정책 30대 주요과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을 평가하면서 차기 정부가 2002년까지 해야 할 주요 여성정책 과제를 선정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과제와 21C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목표로 '여성정책 30대 주요 과제'를 정리하였다.

1. 여성정책담당기구

(1) 여성부신설 및 시·군·구에 여성국(부) 신설

- 여성정책 협조부서로 지정된 40개 관련 부처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 담당관 설치
- 각 분야의 여성통계를 개발하고 여성의 현실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배포
- 여성관련 예산 대폭 확충

97년 67조5천억 중 여성관련 주요예산 약450억(복지부 부녀복지예산 160억, 노동부 근로여성국 100억, 정무장관(제2) 190억, 기타)을 대비해보면 0.07%에 불과

(2)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승격

2.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 확대

(3) 정당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각급 선거에서 여성을 30% 비율로 공천
-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공천: 국회30%, 광역의회 50%

- 당고위직 임명시 : 30%
- 선거공영제 확대 및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4)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 확대

- 국무위원 중 30% 여성할당
- 광역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임명시 정무직 1인 여성에게 할애

(5) 정부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2000년까지 30% 할당 제도화

- 매년 참여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보고
- 여성정책관련 주요위원회(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등) 50% 여성할당
- 성인지적 관점이 시급히 필요한 방송위원회 및 각종 신설위원회 30% 여성 할당

3. 인권문제

(6)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가정폭력방지 예방교육, 상담소 및 보호시설 재정 지원

(7) 성폭력특별법 개정(친고죄 전면폐지, 고소시한 연장, 여성전담 경찰관 제도 확대) 및 미디어의 성폭력 유발요인 규제 강화

(8) 매매음방지법 제정 및 향락업소 규제강화(중간 착취구조 단속 강화)

4. 경제세력화 분야(경제적 역량 강화)

(9) 체용·배치·직업훈련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에게 할당

- 배치 및 직업훈련 30% 할당 (공공직업훈련기간에서 여학생에게 일정비율 입학할당제 도입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모집시 여학생에게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
- 고용할당제 30% (공기업 당연적용, 사기업은 권장하되 세제감면 혜택 및 금

융지원)

(10)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일정비율 할당

- 공무원 상위직 특채시 일정비율 여성할당
- 교수채용시 목표설정 여교수 우선채용
- 5급 이상 승진시 여성공무원 20% 할당
-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승진시 20% 여성할당
-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에 여성공무원 배치

(11)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사생활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의 유급화
- 직장보육시설 확대
-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12) 고용안정대책

- 파견근로법 제정 반대 및 공공직업소개소 확대를 통한 노동력 수급의 활성화
- ILO 시간제노동에 대한 협약 비준
- 가내노동협약과 권리에 따른 가내노동정책 수립 및 보호법 제정
- 여성노동자 산전후 휴가 90일 확대 및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의 출산수당을 의료보험에서 지급
-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법 전면 적용

5. 가족 분야

(13) 가족법 및 국적법 개정

-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불혼제 폐지, 국적법을 부계중심에서 부모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14) 가사노동 평가기준 개정

- 가사노동 평가기준을 ①전 취업여성의 평균임금 ②연령, 학력별 평균임금 ③남편소득의 1/2 중 하나를 적용하고 법정 근로년한을 65세로 확장

(15)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대

-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1인 1연금제를 도입
- 가입자의 연금소득을 부부공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시 피부양 배우자에게 연금분할수급권 인정
- 전업주부에 대하여 임의 가입이 용이하도록 현행보험료를 6%에서 3%로 하향조정

(16)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보육대상 아동의 경제적 수준을 등급화하여 형평성있게 아동에게 지원

(17)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18)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전면개방하고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할 것

(19)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지원

- 편부모 가정의 경제적 지원 현실화 및 평등화, 정서적 지원
- 이혼 등 가족 변동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 가출청소년소녀를 위한 전문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료직업훈련원, 쉼터 설치
- 모자가정의 지원액수 현실화 및 모자보호시설 입소 자격 완화

6. 보건 분야

(2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영세자영업 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의 본인 부담금 폐지
- 모든 가임여성의 산전후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의료보험에서 급여화할 것(초음파 검사 포함)
- 여성관련암(자궁암, 유방암 등) 진찰시 의료보험 급여화할 것

7. 미디어 내 성차별 개선

(21) 미디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심의규정 마련
- 여성의 미디어 활동 지원, 미디어종사자에게 성인지교육 실시
- 대중매체조직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지침서 도입
- 대중매체 의사결정직 승진시 20% 여성할당

8. 빈곤 분야

(22)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복지 확충

- 여성농민을 생산경영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입법화
- 농협이사에 여성농민 30% 할당
- 여성농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종합복지센타 건립
- 농어민연금에 여성농민 독자적인 수급권 인정
-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처 선정 및 담당 전문인력 배치

(23) 빈곤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

-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적 지원과 보호정책
- 여성창업자금 지원

9. 교육 분야

(24) 영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 공교육과 사교육제도의 일원화

(25) 인성교육으로의 일환으로써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교사들의 양성평등적인 재교육과 교직과목 이수과정에서의 여성학 필수과목화

(26) 여성의 정보창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10. 환경 분야

(27) 환경파괴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경 유해 물질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과 보상체계 마련

(28) 녹색생산과 소비를 위한 모니터나 홍보 등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9) 환경정책 수립과 계획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11. 통일정책

(30) 국방비 감축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적 입장이 고려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 수립

종합토론

1. 1990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를 설치하는 법이다.

2.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장과 차관으로 구성되는 정부부처로,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3.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4.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5.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6.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7.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8.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9.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10.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11.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12.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

13. 「국가보훈처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한다. 차관은 차관급으로 한다.